

#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특성과 세무회계

## - 회계 및 세무처리를 중심으로 -



손 상 익

세무사,  
본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 목 차

- I.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관련 법률
- II.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 규정의 적용
- III. 의료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IV. 학교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V.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VI. 공익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VII. 종교(단체)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I.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관련 법률

### 1. 비영리법인의 의의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등을 의미한다.

###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민법39], 민법 제39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인 법률2].

### 4. 비영리법인의 유형

비영리법인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영리법인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의료법인
- ② 학교법인
- ③ 사회복지법인
- ④ 공익법인
- ⑤ 종교법인
- ⑥ 변호사회, 건축사회, 상공회의소 등

## II.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 규정의 적용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특성과 세무회계를 확인하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행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로 세금을 다르게 과세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 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종류를 본점소재지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조합법인을 제외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 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및 과세특례

#####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의 범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규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각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법인세법3③].

-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부동산상의 권리 양도소득) 및 제4호(기타자산 양도소득)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⑦ 상기 ①에서부터 ⑥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채권 등의 매이익)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정규 법인세를 과세한다.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특례

비영리법인에게 상기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미리 손금으로 계상(외부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가능)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4) 유형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법인 등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결국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법인세 납세의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①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②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④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주]: 상기 ④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011.12.8. 개정) 부칙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2012.8.3. 개정) 부칙1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 사회복지법인이 상기 ㉠의 ㉠부터 ㉬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⑥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각의 사업
    -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주]: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이 경영관리하는 국민연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주]: 종교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⑥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각의 사업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2.19. 법령개정) 부칙

- 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 ⑫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⑬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⑭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⑮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⑯ 상기 ①에서부터 ⑮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기 항목에서 열거된 사업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사업, 사회복지법인의 일정한 사회복지사업, 종교법인의 일정한 용역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각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2.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 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영리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 나.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면세규정에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관련분야에서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확인하기로 한다.

#### 1)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각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진료용역은 제외한다(성형수술 등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

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  
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④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  
제용역
- 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일부의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를 과세한다.
- 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⑦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⑧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⑩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  
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⑪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  
는 소독용역
- ⑫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  
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  
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  
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  
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  
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⑮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  
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  
하는 용역
- ⑯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  
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제  
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  
리·보육 용역

## 2) 면세대상 교육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  
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  
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다음에 해  
당하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면세한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  
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 [주: 학교법인이나 학원 등에서 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  
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수련시설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상기 면세 교육용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다.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3)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주: 공익법인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②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④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⑤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 ⑥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4) 공익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즉,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게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가.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2).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⑪ 상기 ① 내지 ⑤·⑦ 또는 ⑧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3).

-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 ③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④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



## 특집 ①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특성과 세무회계

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⑧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⑨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⑩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Ⅲ. 의료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1.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 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의료기관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갖는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개인으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의 형태로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주]: 헌법재판소도 의료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2001.1.18. 98헌바75&89, 99헌바89(병합) 전원재판부].

#### 나. 의료법인 비영리성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는 다음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인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의료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 의료법인의 회계처리

####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의 적용

의료법인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이 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은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1].

####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의 적용대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자는 1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개설자를 말한다 [의료기관 회계규칙2].

### 3. 의료법인의 세무처리

#### 가. 의료법인의 법인세 세무처리

의료법령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대학병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나. 의료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진행되는 보건진료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다. 의료법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IV. 학교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1. 학교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비영리성

학교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다수의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다. 학교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익배당을 하는 법인도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2. 학교법인의 회계처리

#### 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로서 학교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은 상기 회계규칙 이외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다.

## 3. 학교법인의 세무처리

### 가. 학교법인의 법인세 세무처리

#### 1) 수익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사업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

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주]: 학교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에 따라 미래에 5년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나. 학교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 다. 학교법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V.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1. 사회복지법인의 비영리성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 2.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처리기준

####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 제23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회계에 관한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다.

### 3.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처리

####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세 세무처리

##### 1) 수익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특집 1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특성과 세무회계

- 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
- ㉕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㉖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㉗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㉙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011. 12.8. 개정) 부칙
- ㉚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㉛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㉝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2012. 8.3. 개정) 부칙1
- ㉞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㉟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 사회복지법인이 상기 ㉔부터 ㉟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실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상기 열거된 항목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이후 5년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나. 사회복지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②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Ⅵ. 공익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1. 공익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성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기준 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와 제 23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가. 회계원칙

-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지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 나. 회계의 구분

-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다.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3. 공익법인의 세무처리

#### 가. 공익법인의 법인세 세무처리

##### 1) 수익사업의 범위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이후 5년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나. 공익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

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다.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Ⅶ. 종교(단체)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 1. 종교단체의 특수성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들은 신도들로부터 헌금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사적지분이나 상속·배당 등이 없으며 종교의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여 사회 공익적으로 봉사활동 등에 해당 재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단체 사업 활동이나, 종교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대부분 과세를 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2.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우리 나라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단식회계수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거나, 해당 종교기관의 내부처리방침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주의 회계가 아니라,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므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복식부기제도 및 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3. 종교단체(법인) 등에 대한 세무처리

### 가. 종교단체법인의 법인세 세무처리

#### 1) 수익사업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종교단체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신자로부터 기부금 또는 헌금을 받는 행위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부금 또는 헌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종교(단체)법인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법인세(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종교단체가 법인이거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 과세특례(과세이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종교활동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 나. 종교(단체)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법인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 다. 종교단체법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종교단체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1.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2. 의료법 및 「의료기관 회계처리 규칙」.
3. 사회복지법 및 「사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 교육기본법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2013년 판].